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청약 안내

| | | |
|------|----------|---------------------------|
| 분양일정 | 특별공급 | 12월 8일 (수) |
| | 1순위 | 12월 9일 (목) |
| | 2순위 | 12월 10일 (금) |
| | 당첨자 발표 | 12월 17일 (금) |
| | 당첨자 서류제출 | 12월 20일 (월) ~ 12월 24일 (금) |
| | 계약체결 | 12월 28일 (화) ~ 12월 30일 (목) |

1순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청약자격 조건 등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철원군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순위 신청자격

청약자격 조건 등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철원군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예치기준 금액

| 구분 | 강원도 철원군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60%) |
|-------------|---------------------|

인터넷 청약 방법 안내

인터넷 청약 신청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①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네이버인증서 or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
- ② 청약신청 메뉴 ▶ **특별공급** 또는 **1·2순위 선택**
- ③ 신청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선택
- ④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⑤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공통,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 ⑥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
- ⑦ 청약 **접수 완료!**

※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청약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라며, 청약 전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청약홈 접수 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는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청약안내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인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소형 주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시2순위 청약 가능 |
| 청약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른다. |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6,030,161원 | 7,094,206원 | 7,094,206원 | 7,393,648원 | 7,778,024원 | 8,162,400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140%이하 | 6,030,161원 | 7,094,206원 | 7,094,206원 | 7,393,648원 | 7,778,024원 | 8,162,400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160%이하 | 7,236,193원 | 8,513,047원 | 8,513,047원 | 8,872,377원 | 9,333,629원 | 9,794,880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442,225원~ | 9,931,888원~ | 9,931,888원~ | 10,351,107원~ | 10,889,233원~ | 11,427,360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청약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른다. |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611,742원~ 11,829,835원 | 10,111,431원~ 12,444,837원 | 10,611,120원~ 13,059,838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 | 1인 가구 | 160%이하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648,256원 | ~11,350,728원 | ~11,350,728원 | ~11,829,835원 | ~12,444,837원 | ~13,059,838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청약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른다. |